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운영(심사)규정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운영(심사)규정

2019. 08. 27. 일부개정

2021. 07. 17. 일부개정

2022. 11. 18. 일부개정

2025. 07. 06. 일부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2021.07.17. 일부개정>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청소년들의 예술과 희곡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줌으로써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국규모의 고등학교 경연대회와 부대행사(신설) 등을 통해 고교생 동아리의 비경연 축제의 장으로 이에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예술교육과 양질의 예술체험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2022.11.18. 일부개정>

제3조(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 주관한다. 단 개최지 지회에서 공동주관할 수 있다,<2022.11.18. 일부개정>

제4조(운영위원회) 본 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는 (사)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대신 구성, 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협의한다. 한국연극협회 이사회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 숙지시켜야 하며, 참가자 중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자가 참가 할 경우에는 (직계제자 및 8촌 이내 친인척 등)심사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과 다른 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여야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제5조(경연부문)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전국의 고등학교 연극 비전공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동아리의 연극경연으로 진행하며, 시상은 단체와 개인(배우, 스태프)으로 나뉜다.

제6조(참가자격 및 대상) 전국의 예술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연극반, 연극과의 전공학생 참여불가, 단 예술고등학교의 타장르 전공학생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출전이 가능하다)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연극 비전공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반 또는 연극동아리로 소속 학교장

의 추천을 얻은 학교 대표팀(1개교 1개팀)과 각종 지원센터(청소년 지원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희망터,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등)와 대안학교에서 참가 자격을 갖는다. 단 지원센터와 대안학교에서 참가 시 (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도교사 1인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예선대회 기준에 맞춰 치르며 예선대회 최고상 수상 1개교 또는 1청소년단체(단, 서울 3개 단체, 경기 4개 단체)가 본선대회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지역예선대회 완료 후에 본선대회 참가대상 학교를 협회에 통보하며 총 21개 참가팀이 본선대회에 가하게 된다. <2025.07.06. 일부개정>

제7조(참가신청)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 기간 내에 지역예선 접수 일정에 맞추어 공연작품 서류(대본, 무대기술자료 등) 및 출연진을 첨부한 문서를 직접, 우편,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가동의서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작가고지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22.11.18. 일부개정>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 자격요건을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심사위원에게 주요 운용(심사)규정을 통지하고, 예, 본선 심사위원별 점수공개 수락을 확인한 후 위촉한다.

- 1) 해당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 2) 해당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 3) 인접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 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5년 이상인 자
- 5)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 운영 지침’을 원용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날~~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제9조(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주최 단체 3배수 추천자 중 실무위원회 논의로 결정한다.

- 1)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최소 3명, 최고 5명으로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 2)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장르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연극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민 심사참여제를 가능한 한 시행토록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제10조(심사 항목 및 심사 기준) 본 대회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단체상	지도교사와 학생 간의 조화(30%), 공연의 창의성(30%), 기성 극의 모방보다 학생극다운 작품(30%), 참가 요강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품(10%)
개인상	연기의 창의적인 표현력
스태프상	스태프상 음향, 조명, 무대
우수 지도교사상 특별상	별도의 심사 항목 없으며 관계자 및 심사위원이 공로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자(단체) 추천으로 이루어짐

본 대회의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점수는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최저 80점, 최고 99점으로 상. 하한 점수를 규정하며 높은 점수의 단체, 개인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 2) 경연 시간은 60분 **내외의 분량**으로 공연의 창의성과 지도교사와 학생 간의 조화를 **가점의** 기준으로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 3) 기성 극의 모방보다 학생극다운 작품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소년연극제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 심사위원 중 참가자와 관련 있는 자가 심사 할 경우에는 (직계제자 및 8촌 이내 친인척 등) 심사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심사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수상한 경우, 주최 측은 수상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상장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2.11.18. 일부개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심사 채점표에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던 것을 폐지하고 채점표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단체상·개인상의 항목별 순위를 정한다.

제12조(심사 방법) 심사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점수에 대한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 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략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부문별 경연 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2022.11.18. 일부개정>

심사절차	단체상	각 심사위원의 채점표를 바탕으로 상위 팀 선정 후 심사위원 논의 통해 결정
	개인상	심사위원 논의 통해 결정
	스태프상	무대감독, 조명감독 등의 스태프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결정 (분야 표시 - 연출, 희곡, 조명, 음향, 무대 등)
	우수 지도교사상	단체상 수상교, 수상단체 담당 지도교사 중에 심사위원 논의 통해 결정
	연극인 지도강사상	심사위원들이 논의하여 결정 (공연과정에서 총진행을 하는 무대감독의 의견을 반영함)
	특별상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단체)추천 또는 시상내역외의 특별히 우수한 학생 및 지도교사 수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획팀 및 전체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이 결정

제13조(심사결과) 본 대회는 예산과 본선 모두 대회가 종료 후,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경연순서) 본 대회의 지역예선은 전국 시도 주관처에서 지역별로 일정에 맞춰 결정하며, 본선 경연순서는 대회 1달 전 지도교사 모임 추첨으로 정하여 게시한다. 단, 예선이 치러지지 않은 지역은 지역협회 담당자가 추첨에 참여한다. 본선경연의 경우 지역과 학사일정으로 인한 추첨일과 별도로 상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단, 지도교사회의 불참 시 주최 측이 임의로 정한 경연날짜에 공연하도록 한다.<2022.11.18. 일부개정>

제15조(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심의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 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2022.11.18. 일부개정>

제16조(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연극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하여 지도교사에게 <인권 침해방지와 위계폭력 방지 서약서>를 고지하고 이를 서약 받아야 한다. 또한 주최 측은 공연과 행사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을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부서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2022.11.18. 일부개정>

제17조(홍보물 등 발행) 본 대회는 홍보물(팸플릿, 전단지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참가자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18조(운영) 본 대회와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 한다.

- 1)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 본 대회와 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 3) 본 대회와 본선경연내용은 비디오로 담아야 한다.
- 4) 운영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비표를 착용하도록 한다.
(무대스태프와 경연자(배우 및 스태프), 지도교사, 로비 상주인원, 심사위원 등)
- 5) 본 대회와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 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제19조(기타사항) 본 대회와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부 칙 (2019. 08. 27.)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17.)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8.)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7. 06.)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